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9 .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9월 4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3. 9. 19)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3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었기 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창신 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창신동 23-837번지”에서 “창신동 23-816 번지”로 변경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